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07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희승의원 등 63인

나. 발 의 일 : 2024. 7. 2.

다. 회 부 일 : 2024.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 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가 심각 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재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지난 코

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医료를 담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그렇기에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함.

이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및 양여 근거 신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_2201301호)에 따라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로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것으로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부족 현상, 지역별 의료 격차 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의 신

설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필수
 료 공급에 기여하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유
 재산특례 신설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심
 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

[비인기과 전공의 충원율(2024년 기준)]

구분	충원율(%)
산부인과	67
가정의학과	49.8
흉부외과	38
소아청소년과	26

자료: 메디게이트, 전공의 모집결과 리포트,
<https://www.medigate.net/event/attence/report/resident2024>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2020년 기준)]

구분	3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의원
수도권	89.1	27.6	94.7
비수도권	56.7	37.0	75.4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22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

둘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_2201301호)
 은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및 지

3) 「의료법」상 지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은 예산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등은 의료 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고 있음.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https://www.kma.org/notice/sub1_view.asp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7/792491

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도 규정⁴⁾하고 있음. 다만,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게 되는 부담을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예산 등 다른 지원에 더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것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한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도 출연 또는 보조를 통한 지원을 규정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또는 사용료등 감면을 규정⁶⁾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근거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국립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4)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3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그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 및 학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학비등의 보조 및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대학병원의 의학적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대학병원의 의학적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현황]

(단위 : 백만원)

병원명	특례 종류	특례 규모 (’23년 실적)	존속 기한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사용료감면(면제)	638	20.10~25.10
경북대학교병원	사용료감면(면제)	27,681	21.3~26.3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사용료감면(면제)	2,391	21.3~26.3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사용료감면(면제)	5,320	21.4~24.3
부산대학교병원	사용료감면(면제)	9,987	23.1~27.12
전남대학교병원	사용료감면(면제)	12,267	23.1~25.12
전남대학교병원	사용료감면(감경)	3,228	23.1~25.12
충남대학교병원	사용료감면(면제)	16,813	22.10~25.10
충북대학교병원	사용료감면(면제)	5,836	23.1~23.12
특례규모 소계		84,162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_2201301호)은 국유재산특례의 대상을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치 및 구성을 법률에서 상세하게 규정⁷⁾하고 있는 바, 특례 대상의 명확성과 구체성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7)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및 제2장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법적 성격, 임원 등 구성, 대학·대학원의 설치, 교육 및 학위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넷째,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⁸⁾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은 사용료 감면 뿐만 아니라 장기 사용허가도 규정하고 있는 바, 특례 유형에 ‘장기 사용허가 등’도 추가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동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_2201301)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지켜본 후 국유재산특례 신설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지출하게 될 임대료를 예산으로 다시 보전해주게 되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특례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임.

8)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01301호)

제3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대학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 신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준속기한
	219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2028. 12. 31.

문의처

02)6788-5150